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7급 정책지원관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17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

□ 임용분야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부서	직무내용
정책지원관	일반임기제 (지방행정 주사보)	8명	강남구의회 (정책지원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○ 행정사무 감사·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○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○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~ 2025. 2. 28.

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□ 시험일정

원서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인성검사	2차 면접시험	면접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'23.3.29.(수) ~ 3.31.(금)	'23.4.7.(금)	'23.4.10.(월) ~ 4.11.(화)	'23.4.13.(목) 예정	'23.4.17.(월) 예정	'23.5.1.(월) 예정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.

2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,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

□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

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1.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☞ **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**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 등에서

- 지방자치, 정책기획·개발·분석, 예산·결산, 회계, 법제사무, 홍보, 조사·감사 관련 근무경력 또는
- 보건·복지, 도시관리, 환경, 교통, 건축 등의 분야에서 **입법조사·지원, 의원보좌** 관련 근무경력

*공공기관 :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**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**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전임근무(주 40시간, 1일 8시간 기준)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 주 20시간 근무),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
※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으로 함

※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으로 보완 가능하며, 이때 검증을 위해 ‘폐업사실확인서’, ‘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’ 중 1종과 ‘소득금액증명서’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
4.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

□ 근무 조건
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(09:00 ~ 18:00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□ 보수 및 수당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등급 **하한액 책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
○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임기제(7급)	64,776천원	46,006천원

※ 연봉의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

□ 1차 서류전형 (합격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인성검사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방 법 :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
 - ※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면접 시 활용
 - ※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

□ 2차 면접시험 (합격자 개별 통보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)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방 법 :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

[평정항목] 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불합격 기준

- ◆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또는
- ◆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- ◆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○ 추가합격자 결정

- ◆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,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,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

6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3.29.(수) ~ 3.31.(금) 18:00까지 / (3일간)
-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(7층)/강남구 대치동 소재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☞ 등기우편 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
 -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
 - 평일 09:00~18:00 접수 가능(접수시간 12:00~13:00 제외)
 - ※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/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.(우편접수시 사전에 연락바람)

- ▷ 주소 : 우)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, 7층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(강남구의회, 대치동)
- ▷ 우편 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(☎02-3423-8146)
- 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(현금×)

□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- 응시원서 1부
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(3×4cm) 1매 이메일 제출(docbee@gangnam.go.kr)
 - 응시수수료 : 강남구 수입증지 7,000원
 - ※ 강남구청 민원여권과(본관 1층)에서 근무 시간 내(09:00~18:00) 인증기 날인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자기소개서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※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,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-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-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 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※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,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 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
 - ※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·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 -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
 -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**한글 번역본(공증필)**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접수시간은 평일 09:00~18:00(토요일,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(12:00 ~ 13:00)제외)에 한정합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(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)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,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,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-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, 채용(예비)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-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사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문의전화 : 02-3423-8146)

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

2.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(부서)	임용예정직급	채용인원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(정책지원팀)	일반임기제 (지방행정주사보7급)	8명

주요업무	주요업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•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• 행정사무 감사·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•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•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•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필요역량	필요역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정성, 청렴성 및 책임감, 사명감과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• 회기운영, 의사진행, 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• 조례안, 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작성 능력 •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·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

필요지식	필요지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• 조례안, 건의·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

응시요건	응시요건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관련분야: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 등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, 정책기획·개발·분석, 예산·결산, 회계, 법제사무, 홍보, 조사·감사 관련 또는 - 보건·복지, 도시관리, 환경, 교통, 건축 관련 입법조사·지원, 의원보좌 관련 근무경력 <p>*공공기관 :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인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</p>